

학교법인 송선학원

2017학년도 6차 이사회 회의록

구 분	이사	감사
임원정수	8인	2인
재적임원	8인	2인
참석임원	6인	0인

1. 일시 : 2017. 10. 30(월) 15:00~17:00 (회의소집 통보일 : 2017년 10월 19일(목))

2. 장소 : 법인 이사장실(경운대학교)

3. 임원 출결사항

◦참석임원

- 이사(6인) : 박중광, 김만출, 김석종, 김향자, 박유정, 정양숙

◦결석임원

- 이사(2인) : 엄이웅, 이규식

- 감사(2인) : 이종훈, 이인학

4. 안건

- (1) 교육용토지 취득 승인의 건
- (2) 교육용건물 신축 승인의 건
- (3) 보증보험 계약 승인의 건
- (4) 법인 정관변경승인의 건
- (5) 기타토의사항

5. 회의 내용

이사장 박중광 : 오늘 이사회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우리법인이 유지·경영하는 경운대학교의 구미도시계획시설사업에 따른 공공용지취득(교육용토지)의 건, 교육용건물 신축 승인의 건, 학교시설사업의 각종이행 담보금에 대한 보증보험 계약의 건 및 법인 정관변경 승인의 건 순으로 상정하여 의결 한 뒤, 기타 토의사항이 있으면 임원 여러분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1호의 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수처장이 지난 8월이사회에서 취득 승인한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토지인 인덕리 220-1번지등에 대하여 분할측량결과 및 감정평가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보고하다)

간서명	이사장	박중광	이사	김만출	이사	정양숙
-----	-----	-----	----	-----	----	-----

순 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결과				비고	
					정		정			평균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1	산동면	220-1	답	1,673						
2	인덕리	221-1	답	39				2,045,550	221에서 분할	
3		221	답	217	5				221-1,2로 분할	
4		220-2	제방	408				0	220-3으로 분할	
5		223-1	천	245				,00		
6		223-2	전	172	4					
7		222	천	119						
		합계								

(이사 상호간 감정평가서등 관련자료 검토후 의견 교환하다)

이사 김만출 : 분할측량으로 인해 당초 면적에서 약 1,500㎡가량 축소 되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취득가액을 줄여서 예산절감에 큰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또한 감정평가법인의 평균 감정평가액이 50원으로 평가되었는데, 한국농어촌공사와 원할한 협의를 통해 적절한 가액에 이를 매입하여 경운대학교 교육환경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인덕리 220-1번지외 6필지를 교육용토지로 취득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사 김석중 : 동의안에 찬성합니다. 재청합니다.

이사일동 : 찬성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이사장 박종광 : 그럼 이사 전원찬성으로 교육용기본재산(토지) 취득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취득기로 승인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안건은 교육용건물 신축 승인의 건입니다.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수처장이 인덕리 산5-46번지외 34필지상에 교육용건물을 아래와 같이 신축코저 한다며 관련자료 첨부하여 상세히 보고하다)

간서명	이사장	박종광	이사	김만출	이사	정영숙
-----	-----	-----	----	-----	----	-----

- 연 면 적 : 1836.3㎡(지하1층, 지상2층)
- 건 축 명 : (가칭) 항공기술교육원
- 건축비용 : 약 20억원
- 사용계획 : 프라임사업 선정으로 신설된 항공관련 학과들의 항공정비교육등 교육기본시설(강의실, 실험·실습실 및 공동시설)로 활용.

(이사 상호간 질의토의 및 관련자료 검토 후)

이사 정양숙 : 항공관 건물의 완공으로 항공관련학과 재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공정비관련 교육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렇게 항공기술교육원(가칭)을 신축코저 한다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여러가지로 검토해본 결과 건축비용등은 충분히 교비로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이를 신축하면 항공정비교육에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저는 교육용건물로 신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사 박유정 : 재청합니다.

이사일동 : 찬성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이사장 박중광 : 이사 전원께서 찬성하시므로 교육용건물 신축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제3호의안 보증보험 가입 승인의 건입니다.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수처장이 구미시도시계획시설(학교) 실시계획(변경)인가 등에 따라 경운대학교 부지내 교육시설을 위한 인허가시 필요한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등의 각종공사 이행보증금 및 산지전용복구비등 여러 가지 예치금을 구미시에, 농업생산 기반시설의 사용에 따른 설치시설물 철거(원상복구)비용등의 예치금을 한국농어촌 공사에 각각 예치해야 하나, 그 이자율을 감안하더라도 보증보험으로 가입하여 대체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계속해서 보증보험으로 계약코저 한다며 관련자료 첨부하여 상세히 설명하다)

(이사 상호간 관련자료 검토 및 의견교환 후)

간서명	이사장	박중광	이사	김민출	이사	정양숙
-----	-----	-----	----	-----	----	-----

이사 김만출 : 관련자료를 검토해보니 경운대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인허가시 보증보험을 통하여 각종예치금을 처리해 왔으며 이는 경운대학교 예산절감에 크게 도움이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각종 예치금은 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사 정양숙 : 재청합니다.

이사일동 : 찬성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이사장 박중광 : 이사 전원께서 찬성하시므로 각종 인허가시 관련된 예치금등은 보증보험으로 가입하여 예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제4호의안 법인 정관변경 승인의 건입니다.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수처장이 사립학교법 제66조의4(징계사유의 시효)에 따라 정관을 일치시키고, 대학내 교학부총장과 대외부총장의 직무를 통합하여 업무를 상호 보완토록 하고, 총장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부총장으로 총장직무를 대행토록 하는 등, 경운대학교 대학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며 정관변경 신규조문대비표등 관련 자료 첨부하여 상세히 설명하다)

(이사 상호간 정관변경안 검토 및 질의 토의 후)

이사 김만출 : 정관변경안을 검토해보니 징계사유의 시효를 관련법령에 따르도록 하여 이를 일치시켰고, 경운대학교에 2인이내의 부총장을 두고 서로 보완케 하는 등, 정관변경안은 대학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원안대로 정관 변경을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사 김석중 : 재청합니다.

이사일동 : 찬성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이사장 박중광 : 이사전원께서 찬성하시므로 정관변경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간서명	이사장	박중광	이사	김만출	이사	정양숙
-----	-----	-----	----	-----	----	-----

(이사장의 요청에 의거 임원간 호선에 의하여 간서명 임원으로 박중광이사장, 김만출이사, 정양숙이사를 선임기로 임원 전원 찬성하여 이사장이 선임하다)

이사장 박중광 : 기타 토의사항이 있습니까?

이사전원 : 없습니다.

6. 폐회선언

이사장 박중광 : 기타 토의할 안건이 없으면 이만 폐회를 선언합니다.

이사장은 이날 오후 5시에 회의가 다하여 폐회를 선언하다.

본 이사회 회의록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참석이사 전원이 서명·날인하다.

2017년 10월 30일

학교법인 송선학원 이사장 박중광

박중광

이사 김만출

김만출

이사 김석종

김석종

이사 김향자

김향자

이사 박유정

박유정

이사 정양숙

정양숙

송선학원 정관변경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구)	개 정 (신)
<p>제6장 교직원</p> <p>제2절 교원징계위원회</p> <p>제68조 (징계사유의 시효) 교원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u>2년을 경과한 때에는</u> 이를 행하지 못한다.</p> <p>제7장 직제</p> <p>제2절 대학</p> <p>제79조 (총장 등) ①~② “생략” ③ 대학에 <u>교학부총장, 대외협력부총장</u>을 둘 수 있으며, 교수, 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④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u>교학부총장이</u>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부 칙 <u>(신설)</u></p>	<p>제6장 교직원</p> <p>제2절 교원징계위원회</p> <p>제68조 (징계사유의 시효) 교원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u>관련법령에 따른 징계시효가 경과한 때에는</u> 이를 행하지 못한다.</p> <p>제7장 직제</p> <p>제2절 대학</p> <p>제79조 (총장 등) ①~② “생략” ③ 대학에 <u>2인이내의 부총장</u>을 둘 수 있으며, 교수, 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④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u>이사회에서 지명하는 부총장이</u>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부 칙</p> <p>1. <u>(시행일) 이정관은 2017년 11월 1일부터</u> 시행한다.</p>

간서명	이사장	김정광	이사	김민출	이사	재영욱
-----	-----	-----	----	-----	----	-----